

의안번호	2205116
의 퇴 인	조경태 의원
회 답 일	2025. 1. 7.
추계번호	24A468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1억 4,750만원(연평균 2억 2,9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192.5	—	—	—	—	192.5	38.5
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 수립 (안 제7조)	—	190.0	190.0	190.0	190.0	760.0	152.0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	39.0	39.0	39.0	39.0	39.0	195.0	39.0
합계	231.5	229	229	229	229	1,147.5	229.5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산업의 유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격차해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7조(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8조(격차해소산업 관련 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와 관련 정부 주요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원장의 위촉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 중 1인임(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10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및 발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1조(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해소산업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용수 공급, 폐수처리 등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재량규정

- 1) 이와 관련한 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지역투자촉진'사업 및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현황은 [참고자료1]에 첨부함
- 2)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2조(격차해소산업의 기업 및 청년근로자 지원) 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차해소산업 관련 기업 등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해당산업의 신설·증설과 이전, 창업등을 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²⁾」,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³⁾」 등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에 소재하거나 소재할 예정인 격차해소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세대 근로자에게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급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에서 우대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 13조(인력의 양성 및 확보)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산업 관련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위해 인력의 전문역량향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 14조(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격차해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차해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 3)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국가및 광역자치단체등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6조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
3	안 제7조 (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의 수립)	○	—
4	안 제8조 (격차해소산업 관련 기구)	○	—
5	안 제10조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안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 및 감면 요건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제정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연계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세수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안 제11조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해소산업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안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재정지출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2조(격차해소산업의 기업 및 청년근로자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차해소산업 관련 기업 등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해당산업의 신설·증설과 이전, 창업등을 지원하거나, 격차해소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세대 근로자에게 주택 관련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안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재정지출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8	안 제13조(인력의 양성 및 확보)	×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산업 관련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위해 인력의 전문역량향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절차 및 지원 방안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재정지출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9	안 제 14조(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격차해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차해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절차 및 지원 방안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재정지출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제정안 중 신설에 해당하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라 정부에서 5년 단위로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9,200만원 (연평균 3,85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기본계획 수립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의 연구 용역비 평균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

[표 1]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유사한 연구용역 현황

연구제목	발주처	실시년도	예산(백만원)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3	140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0	8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2020	460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추진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90
평 균			192.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제출자료

[표 2] 제정안의 기본계획 수립시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비용	192.5	-	-	-	-	192.5	3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 수립(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7억 6,000만원(연평균 1억 5,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다음 해인 202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실행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사례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균형발전지원(3362-305)사업의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지원 금액⁴⁾을 준용한 금액(연평균 190백만원)을 활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소요 금액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표 3] 제정안의 실행계획 수립시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실행계획 수립 비용	-	190.0	190.0	190.0	190.0	760.0	15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격차해소산업 관련 기구 설치 (안 제8조)

-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안 제8조제1항⁵⁾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되

4)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지원 사업의 최근 3년('23-'25) 예산은 190백만원으로 동일

5) 안 제8조(지방투자위원회) 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담당 업무를 지원한다. (각 호 생략)

므로 소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 15명 중 13명으로 가정
 - 안 제8조제2항과 제3항⁶⁾에 따르면 위원 정수는 위원장(국무총리) 1명, 간사 1명(산업통상자원부차관 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임
 -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알 수 없으나, 추계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제정안에 따른 최대 인원인 15명으로 하고,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과 간사 1명을 제외한 13명으로 가정
- 회의 횟수는 연 12회(월평균 1회)로 가정
 -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 빈도 및 주기를 알 수 없으나, 추계를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상부위원회)의 최근 회의 횟수를 준용하여 월평균 1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⁷⁾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위촉직 위원의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9,500만원(연평균 3,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위원 수(13명) × 회의 횟수(12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3,900만원

6) 안 제8조(격차 해소 산업 관련 기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격차해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 중 1인이 된다.

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4]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	39.0	39.0	39.0	39.0	39.0	195.0	3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서영빈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영빈	02-6788-4653	ybin@assembly.go.kr

[참고자료1] 산업통상자원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해소산업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지역투자촉진(3363-306)	199,029	208,826	221,831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3363-332)	3,028	1,720	5,653

자료: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세부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